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 현황과 과제

연재 II

한상욱 / 환경처 조정평가실장

다. 야생동. 식물 보호

- 특정야생동. 식물

멸종위기에 있거나 급격한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야생종중 특히 다른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야생동. 식물 92종을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야생동. 식물로 지정하고 불법포획 또는 채취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 천연기념물

한국특산종, 희귀종 또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야생동. 식물 107종을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 금렵조수

야생조수중 보호가 필요한 새와 짐승류 455종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렵조수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 야생동. 식물 보호대상종현황 ◇

部處	關係法	保 護 對 象 種 의 數						
		計	植物	哺乳類	鳥類	昆蟲類	魚類	其他
計		654	127	98	389	23	5	12
環境處	環境保全法 (特定野生動植物)	92	59	○	○	21	○	12
文化部	文化財保護法 (天然紀念物)	107	68*	6	26	2	5	○
山林廳	鳥獸保護 및 狩獵에 관한 法律 (禁獵鳥獸)	455	○	92	36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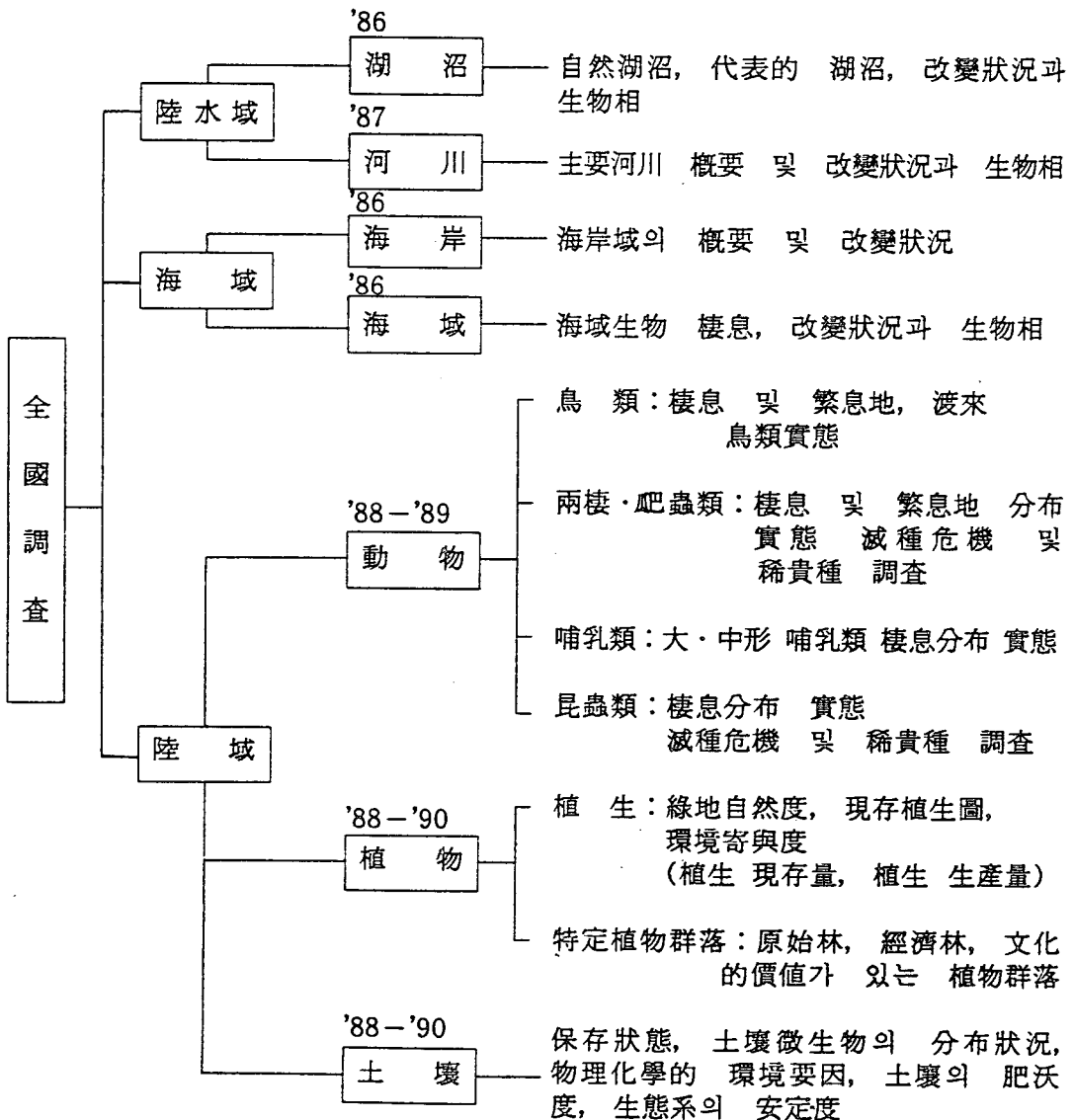
* 자생지에 열거된 총 종수

라. 자연생태계 전국조사

자연생태계의 실상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의 첫 단계의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관계기관,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조사는 특정지역과 특정분야에 국한되었고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 목표를 두었던 것도 아니었다.

환경처가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전국조사에 대비한 표본조사, 조사기본계획의 수립 즉 사전준비단계를 거쳐 1986년에 착수한 자연생태계 전국조사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자연생태계, 동. 식물분포, 자연의 변화상태 등을 파악하여 자연환경보전장기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한다는 데에 목적을 두고 1990년 완료를 목표로 조사가 시행되는 중에 있으며, 동 조사가 완료되면 한

◇ 자연생태계 전국조사 내용 및 추진 체계도 ◇



국가자연도표를 작성하고 자연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구역, 특정 야생 동·식물 및 동 보호구역 지정 등 계획적인 자연환경 보호 관리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마. 자연보호운동의 전개

개발의 확대와 야외활동의 증가로 자연의 손실과 오염이 심화되어 이를 정화하기 위한 자연보호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연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단체로는 자연보호중앙협의회가 각급 행정단위조직 및 기관별로 자연보호회를 조직하고 쓰레기수거 등 자연정화활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자연보존협회가 자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연구와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IV. 자연환경보전에 따른 난제

고도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국민생활수준도 향상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욕구도 기본적 욕구에서 사회정의, 소득의 균등배분, 생활의 질적 향상등 질적 욕구로 이행되고 있으며 전반적 국가, 사회의 흐름에 부응하는 환경보전 단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질의 피라미드 개념에 의하면, 제1단계는 생물학적 안전성이 문제되는 초보적 단계이며 제2단계는 대기, 수질, 폐기물오염 등 도시 환경 위생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이고 제3단계는 생활의 질 또는 환경의 질(Amenity)을 추구

하는 단계이다.

우리나라의 환경행정은 환경질 피라미드의 제2단계에서 제3단계로 이행할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제2단계 과제인 환경오염문제 해결의 틀이 어느정도 잡혀가고 있는 반면 제3단계의 과제인 생활의 질 또는 쾌적성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쾌적성의 확보는 자연환경보전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따른 난제는 다음과 같이 요구될 수 있다.

첫째,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국가의 예산, 인력배분면에서나 국토관리면에서도 항상 개발이 보전보다 우선되는 등 정책적인 배려가 미흡하였다.

둘째, 환경처, 내무부, 건설부, 문화부, 산림청, 수산청 등에 자연환경보전기능이 분산되어 있고 종합조정기능이 결여되어 일관된 정책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셋째, 자연환경의 보존에 관한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연환경보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대책이 미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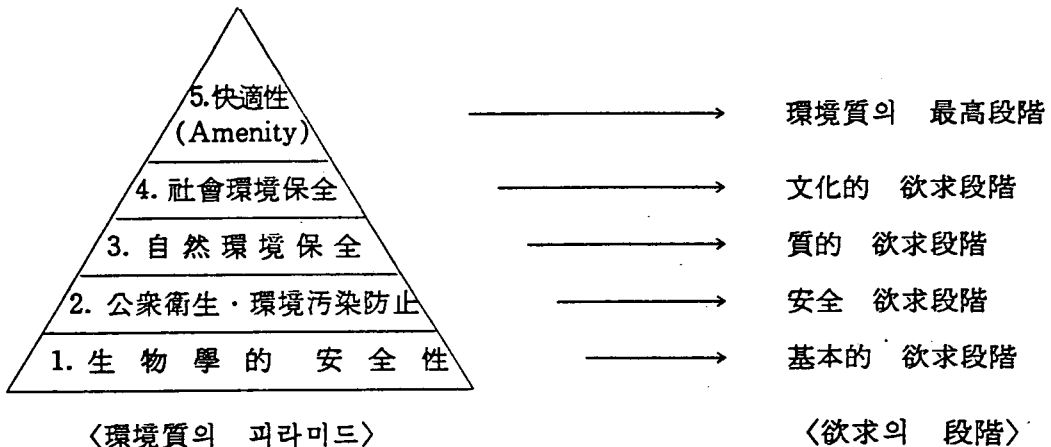
넷째,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자연환경 보전의 실천적 행동과 참여가 미흡하였다.

V.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대책방안

1. 목표 및 방향

자연환경의 보전이 우리세대와 후대의 생존과 번영

◇ 환경질의 피라미드개념과 인간의 욕구 ◇



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고 시대적 요청인 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효성있는 보전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보전의 기본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우선 장기목표는 국토의 보전과 생태계의 자연적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연생태계의 다양성과 균등유지에 힘쓰고 우리나라의 특징적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이 자연과 융화될 수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며, 단기목표는 자연공원, 자연생태계보전구역등 보전구역을 확대하고 야생생물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도시지역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도시 대기질개선을 도모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국민의 생활과 직결 되는 자원으로서의 자연환경의 유한성과 경제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자연환경 보전의 기반을 공고히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을 환경오염방지 및 국민건강 보호와 연계하여 총체적으로 대응하며, 다양한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둘째, 자연환경의 이용 및 개발압력에 대응하는 시책 및 사업을 개발추진하여 지역자연환경은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자연환경에 대한 국민적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계도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환경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국제자연보호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2. 주요대책 방안

가. 제도의 정비

-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적 제정

이 법은 자연환경보전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와 국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자연환경보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행위주체별 주요보존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 자연환경보전행정의 체계화

자연환경보전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보전업무의 총괄조정기능의 강화와 함께, 개발기능과 개발규제 기능을 분리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위한 기능조정이 필요하다.

나. 자연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국토이용계획과 연계하여 자연생태계 및 야생동·식물 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다. 보호구역 지정·관리

- 자연생태계보전구역

원시적 또는 희귀한 자연생태계의 보호를 위해서는 보전구역을 확대지정하고 동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연구사업의 추진과 보호시설 설치등 관리의 적정화를 기하고 인위적 훼손을 방지한다.

◇ 개발제한구역 설정 현황 ◇

圈 域 別	區 域	面 積 (km ²)
計	34市 36郡	5,397.1
首 都 圈	16市 8郡	1,566.8
中 部 圈	3市 8郡	915.6
湖 南 圈	4市 7郡	867.7
嶺 南 圈	10市 12郡	1,964.4
濟 州 圈	1市 1郡	82.6

◇ 시급도시(61개) 공원지정 현황 ◇

計	自然公園	近隣公園	어린이公園	기타公園
3,748個所 (670.52km ²)	173 (456.11)	895 (186.7)	2,653 (6.02)	27 (21.69)

- 자연공원

우리나라의 대표적 풍경지를 계속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공원구역을 확대하고 보전활동을 강화하며, 공원계획 수립시 과도한 개발과 이용을 억제하며 공원내 대규모 자연환경 훼손사업의 금지등 공원계획을 보전 위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시설을 정비하고 위락시설의 입지를 제한하여 이용의 적정화 및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 천연기념물보호구역

보호구역 지정의 적정화를 기하고 보호시설의 정비와 구역내 자연환경 훼손행위를 규제하는등 관리를 강화한다.

- 도시지역의 자연환경보전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여가활동을 위한 도시공원의 조성을 확대하고 도시 주변의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주택지, 공장부지내 녹지를 조성하므로써 도시 대기정화에도 기여토록 한다.

라. 야생생물 보호

- 조수보호구

대규모 조수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 조수보호구를 확대지정하고 동 지역에 대한 보호시설 정비와 개발행위를 규제하여 보호구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 보호대상 야생동. 식물의 지정 관리

감중위기종, 한국고유종, 희귀종, 감소추세종 등 보호대상 야생동. 식물의 지정을 확대하고 보호대상종의 채취, 포획, 이식, 상거래등의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한편, 멸종위기종, 희귀종의 인공증식을 통하여 원래의 자생지에 재배치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 야생동. 식물 보호를 위한 조치

뱀, 개구리, 자라 등을 이용한 식품영업행위, 코뿔소, 사향노루, 호랑이등 야생동물을 원료로하는 의약품의 제조, 판매행위를 규제하고 야생란 등 화훼식물의 불법채취, 판매를 규제한다.

마. 자연환경보전 범국민운동의 전개

국민의 자연보호운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자연보호단체의 육성. 지원 및 이들의 활동을 조기화, 체계화한다.

바. 국제협력의 강화

범지구적 자연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들의 주요행사 및 보전계획에 동참하여 범지구적 생태계 위기해결에 참여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국제조류보호조약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

VI. 맺음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1.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 및 자연환경보전업무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장기적 자연환경보전의 목표와 정책방향, 단계별 사업계획 등을 그내용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이 법정부적인 차원에서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
3. 우수한 자연생태계, 자연풍경지를 보존하고 자연생태계보호구역, 자연공원, 도시공원의 확대와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며, 식물의 대기오염정화기능을 활용한 녹지대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4. 야생동. 식물의 멸종방지와 자연생태계 균형유지를 위한 야생동. 식물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서식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규제하는등 보호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5. 자연환경보전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민간단체도 육성하여야 한다.

6.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 및 민간 단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끝으로 자연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인간행위를 규정하

고 선도할 보전의 원칙을 선언하는 유엔 세계자연헌장 (World Charter for Nature)을 소개한다.

세계자연헌장

(World Charter for Nature)

UN 총회 결의 제37/3호 (1982. 10. 28)

UN총회는

- ◇ UN의 기본목적, 특히 국제적 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가간 친선관계의 조성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지적 또는 인류애적인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의 증진등 목적을 재확인하며,
 - 인류는 자연의 일부요, 생명은 이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을 공급하는 자연계에 의존하고,
 - 인류문명은 자연에 근원하였으며 자연은 인류문화를 형성하고 모든 예술적, 과학적 성취에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자연과의 조화된 삶이 인간에게 창의성의 개발과 정서함양 및 휴양의 기회를 제공함을 인식하고,
 - 모든 생물종은 유일한 것으로서 인간에의 유용성과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하며, 인간은 이러한 인식과 일치하는 도덕적 행동규범을 따라야 하고,
 - 인간은 그 행위 또는 행위의 결과로 자연을 악화시키거나 자연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는바, 따라서 자연의 본질과 안정을 유지하고 자연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확신하며,
 -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받는 혜택은 주요한 생태계 기능과 생명부양체계의 유지 및 생물종의 다양성에 의존하는바 이들은 인간에 의한 과도한 개발과 서식처 파괴로 위협받고 있고,
 - 자연자원의 오 남용과 동시에 여러나라, 여러국민들간 경제질서 확립의 실패에 기인한 자연계의 훼손은 인류 문명의 경제, 사회, 정치적 체제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것과
 - 희소자원에 대한 경쟁은 분쟁을 야기하는바 자연과 자연자원이 보존은 정의구현과 평화유지에 기여하며 인간 이 전쟁과 무기를 버리고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 한 자연의 보존이 어렵다는 것을 공감하며,
- ◇ 인간이 현세대와 후대의 편익을 위해 야생종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능력을 유지, 향상하는 지식을 증진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 ◇ 자연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각 국가와 국제사회, 개인과 집단, 공공과 민간의 각 레벨에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을 인정하며,
- ◇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자연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인간행위를 규정하고 선도할 다음과 같은 보전의 원칙을 선언하는 본 세계자연헌장을 채택한다.

I. 일반원칙

1. 자연은 존중되고 기본적 기능이 손상되어서는 아니된다.
2. 지구상의 유전자원은 손상될 수 없으며, 야생이든 길들여졌든 모든 생물종의 개체수는 최소한 이들의 생존에 충분한 정도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서식처가 확보되어야 한다.
3. 육상과 해양 등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보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이하고 고유한 자연 지역, 각종의 다양한 생태계의 표본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생물의 서식처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인간에 이용되고 있는 생태계와 생물은 토양과 해양 및 대기자원과 함께 최적의 지속적 생산력을 달성.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되 이들과 공존하는 다른 생태계나 생물종을 위협하여서는 아니된다.
5. 자연은 전쟁 또는 기타 적대적 행위에 의해 야기되는 파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II. 기능

6. 인간의 욕구는 자연계의 기능이 적절히 발휘되고 본 현장에 규정된 원칙들이 준수될 때에만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유념하여야 한다.
7. 경제 및 사회개발사업을 계획, 시행함에 있어 자연 보존이 이들 사업의 핵심적 부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8. 경제개발, 인구증가, 생활향상 등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자연계의 자생력이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해 증진될 수 있다는 점과 인간의 생존과 정주를 위해 자연계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것에 대해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9. 각 지역을 각종 이용목적별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물리적 제약, 생물적 생산력과 다양성, 지역의 자연경관 등에 관해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10. 자연자원은 낭비되어서는 아니되며 본 현장에 규정된 원칙에 적합하게끔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
 - (a) 생물자원은 이들의 자연적 재생산능력범위 이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b) 토양은 비옥도와 유기물 분해능력을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토양침식이나 모든 형태의 토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반방법을 통해 그 생산력을 유지하고 증진하여야 한다.
 - (c) 한번 사용하여 소비되지 않는 물등 자원은 최대한 재이용하여야 한다.
 - (d) 재사용이 불가능한 자원은 가용자원의 양, 자원의 소모, 자원 개발의 자연계의 기능유지와 상치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개발, 이용하여야 한다.
11. 자연에 영향을 줄 사업은 억제하고 자연에 악영향과 위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 (a) 자연에 회복불능의 손상을 가져오는 사업은 금지되어야 하고,
 - (b) 자연에 대한 위해를 야기할 사업은 철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 예상되는 편익이 자연에 주는 손상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만약 잠재적 악영향을 충분히 예측할 수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여야 하고,
 - (c) 자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의 결과를 분석하여야 하는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착수 훨씬전에 시행하여 잠재적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 (d) 농업, 목축, 임업 및 수산업은 해당지역의 자연적 특수성 및 제약요소를 고려하여 시행하며,
 - (e) 인간활동에 의해 손괴된 지역은 이들 지역의 자연적 잠재력 유지와 지역주민복지사회향상의 목적에 일치 되도록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12. 오염물질의 자연생태계에의 배출은 막아야 하며,
 - (a) 만약 이것이 부적당하면 이러한 오염물질은 가능한 최적의 수단을 이용하여 배출원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 (b) 방사성폐기물 또는 유해폐기물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자연재해나 질병의 만연을 방지, 통제 또는 제한하기 위한 수단은 이들 재앙의 원인에 직접 겨냥되어야 하며 자연에 주는 부작용을 피해야 한다.

Ⅲ. 집행

14. 본 현장에서 제시한 원칙들은 각국의 법령에 반영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15. 자연에 관한 지식은 생태학교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보급되어야 한다.
 16. 모든 계획은 자연보존전략의 수립, 주요 생태계의 목록화, 계획된 정책 또는 사업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들은 적절한 방법으로 일반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국민이 이에 협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자연보존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행정조직과 보존계획 및 소요자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18. 과학기술 연구로 자연에 관한 지식을 증진하고 이 지식의 전파, 보급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19. 자연생태계와 야생생물 및 자연의 변화 등의 상황을 항상 관찰, 감시하여 이의 훼손 또는 훼손 위협을 조기에 발견해내고 적기에 훼손을 방지토록함과 동시에 관련 보존 정책과 방법의 효율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20. 자연을 파괴하는 군사활동은 중지되어야 한다.
 21.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 국제기구, 개인, 집단, 기업 등은 :
 - (a) 상호 정보교환과 협의 등을 포함한 공동의 노력과 활동을 통해 자연보존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 (b) 자연에 악영향을 주는 상품과 제조공법 및 악영향을 평가하는 방법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 (c) 환경보호와 자연보존을 위한 적용가능한 국제법을 제정, 시행해야 한다.
 - (d) 한 나라의 사업이 다른나라의 자연생태계에 손상을 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 (e) 국가 통치권밖의 지역에서의 자연도 보호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22. 각국의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각국은 국내의 해당기관 또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본 현장의 제조항을 실천하여야 한다.
 23. 모든 사람들은 각국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환경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또한 환경이 파괴되었을 경우 이를 회복하는 조치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24. 모든 사람들은 개인, 단체의 일원 또는 정치활동에의 참여로서 본 현장의 제조항에 합치되는 행동을 할 의무를 가지며, 본 현장의 목적과 필요요건이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UNEP '90年 제18회 世界環境의 날 주제

아동과 환경

The Children and the Environment